

<학위자격시험 관련규정>

경희대학교대학원 학칙

시행일 : 2021.09.01.

제34조(학위자격시험)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, 외국어시험, 전공시험, 공개발표 등의 학위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,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시행일 : 2022.03.01.

제22조(학위자격 시험)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학위자격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.

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제23조(학위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) ①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.

② 학위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4조(학위자격시험 합격기준)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급제(P) 또는 낙제(N)로 평가하고 학위자격 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